

사업 저장소 사용(개시·중단·폐지·재개) 신고

1. 사무안내

고압가스사업 허가·신고·등록을 한 자가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30일 이상 중단·폐지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에 신고하여야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
2. 신청대상자 : 고압가스사업자 등

3. 신청방법 : 방문

4. 관련법규

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
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

5. 수수료 : 없음

6. 구비서류 : 신고서

7. 처리기간 및 제출처

제출처	처리기간	처리부서	경유·협의부서	비고
담양군	즉시 (3시간이내)	투자유치단	-	

8. 민원처리 흐름도



